

감리지적사례 FSS/2008-04 :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선박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면서 은행에 예금담보(양도금액의 약42%)를 제공하였음에도, 은행이 제3자에게 동 매출채권을 매도하는데 제약조건이 없다는 사유로 모두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2년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예금담보를 제공금액까지 매출채권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매출채권 양도로 회계처리하여 동액 만큼 매출채권 및 차입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20 및 30에 따르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가)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나)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이 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을 재양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일부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등)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형식적으로는 매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이 동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없더라도, 회사가 보증(양도담보)을 제공하였다면 동 예금담보권 이전 없이 제3자에게 재양도할 경우, 은행은 회사로부터 양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거나 예금담보에 상응하는 소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회사가 제공한 예금담보 금액만큼은 실질적으로 매도능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매출채권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